

# 정책/POLICY

##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BFA-RA  
책임 부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General Counsel

### 정책 책정(Policysetting)

#### A. 목적

이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원칙 관계나 연관에서의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정책을 책정하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비전과 목표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정책개발 및 적용 절차를 일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개발 절차에서 학교 커뮤니티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B. 이슈

메릴랜드 주법은 교육위원회에게 교육감의 조언과 함께 교육구의 교육 관련 정책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다른 조처와 함께 MCPS 를 위한 원칙을 관리하는 공식 정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개발에 교육위원회 정책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따라, Montgomery 카운티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 여러 커뮤니티 일원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의견제공 절차와 함께 정책을 분석, 개발, 적용, 관찰관리,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 C. 입장

##### 1. MCPS 정책 및 규정책자

- a) 정책은 MCPS 웹사이트 “Board Policy”에 있는 MCPS 정책과 규정 핸드북(*Policies and Regulations Handbook*)에 명확히 책정되어 있는

처리, 지침 원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적용 및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MCPS의 비전과 목표를 책정하고 학교 커뮤니티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지침 및/또는 학교 시스템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든 정책은 세 글자로 명시하며 온라인 *MCPS Policies and Regulations Handbook*에 글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b) 규정은 교육감이 개발한 절차적 지침을 제공하며 교육위원회 정책, 연방, 주, 지방법의 적용을 위해 온라인 *MCPS Policies and Regulations Handbook*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 정책 개발

- a) 교육위원회에는 정책관리 위원회(Policy Management Committee of the Board)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의원은 3명 미만으로 한 의원 당 3년의 임기와 교육위원회 12월 회의에서 매해 선출되는 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학생의원을 정책관리 위원회의 4번째 정식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책관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정식 적용을 위한 정책 초안을 검토, 추천, 제시합니다.
- b) 정책관리 위원회, 교육감 및/또는 교육위원회 의원과 이해 당사자는 협력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검토합니다.
- (1) 이해 당사자의 의견제시는 Montgomery 카운티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 여러 커뮤니티 일원을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위원회 정책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따라 정책 개발이 다양성 커뮤니티인 Montgomery 카운티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2) 학생 대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회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또는 정책개발과 재검토 절차에 학생의 의견을 구하기 등이 있습니다.
  - (3)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워크그룹, 공개 회의, 공공 의견 수집을 위한 적절한 테크놀로지 사용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합니다.

- (4) MCPS 웹사이트를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c) 정책관리 위원회, 교육감/대리인과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적절한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워크그룹이 정책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입니다. 정책 초안은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 (1) 교육위원회의 미션, 목표와 목적을 포함한 통치방식에 관련,
  - (2) 기타 교육위원회와 정부기관 정책,
  - (3) 연방, 주, 지방법과 기준,
  - (4) 법원 결정과 타 법적 제한 또는 상태,
  - (5) 비용에 따른 영향,
  - (6) 교육구 행정의 영향,
  - (7) 정책에 따른 영향,
  - (8) 연방, 주 그리고 지역 문헌과 연구조사, 그리고/또는
  - (9) 비슷한 정책과/또는 타 교육구의 최적의 적용.
- d) 정책관리 위원회와 적절한 직원은 교육위원회에 토론과/또는 개정, 잠정적 결정을 위해 정책 사항을 제안합니다.
- e) 정책 항목은 다음 결의안을 동반합니다:
  - (1)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 전 최소 21 일 동안, 해당 정책의 잠정적 적용이 유보됨을 명시,
  - (2) 시민, 이해 당사자, 교직원이 의견을 제공할 기회,
  - (3) 청문회 기회를 제공(교육위원회가 원할 경우), 그리고
  - (4) 교육감/대리인이 조언과 추천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

- f) 최종 적용을 취할 때, 교육위원회는 공공의견, 교직원의 답변, 정책관리 위원회의 추천, 교육위원회 의원이 추천한 개정안 고려를 검토합니다. 공개의견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공공의견은 공적 기록의 일부가 되며 정책관리 위원회의 추천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위해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다는 점을 알립니다. 의견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 또는 정책관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게 첫 공개 의견 제시 후, 정책에 대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책을 다시 공개 의견제시를 받도록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g)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 표준형태로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
- (1) 정책의 목적에 관한 설명,
  - (2) 정책이 제시한 문제 또는 사항의 설명과 해결을 위한 요지,
  - (3) 적절한 경우 이 입장의 이유 및/또는 정당성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이유와/또는 정책 입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수용하는 입장의 서술,
  - (4) 결과 또는 희망하는 결과의 서술,
  - (5) 정책 적용 지침에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 (6) 교육위원회와 공중을 대상으로 작성할 보고서에 적용과 효과, 결과와 성취 및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명시. 보고서의 빈도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며, 공중의 높은 관심, 법적 의무조항, 활동의 실험적/획기적 특성에 따릅니다.

### 3. 기술적 개정

정책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가 정책에의 기술적 개정을 수용하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

- a) 연방, 주, 지방 법을 준수하기 위해,
- b) 더 최근에 제정한 교육위원회 정책에 해당 정책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또는

- c) 디렉터리 정보(예: MCPS 사무실 이름 등)의 갱신을 위해. 사무실로의 추천은 만약 사무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기능을 하는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개정은 정책관리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즉각 채택할 수 있습니다.

4. 해석 규칙

연방, 주, 지방법과 규정과 갈등을 빚을 경우, 교육위원회 정책을 대체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의 갈등의 경우, 제일 최근의 정책이 더 오래된 정책을 대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독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5. 정책 적용

적용 후, 교육감은 다음을 하게 됩니다 -

- a) 적절한 경우, 규정의 적용 개발,
- b) 핸드북에 있는 모든 정책과 규정의 발행과 적절한 영향을 받는 해당 단체에 배부,
- c) 정책과 정책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Section F 하의 요건인 검토와 보고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보고합니다.

6. 정책 정지

법이 변경되거나 구조적 위급한 상황에 따라 모든 정책 또는 정책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정지해야 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a) 전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책 전체 또는 부분의 정지에의 행동을 취하기, 그리고/또는
- b) 앞으로의 조치를 위한 추천을 위해 다음 예정된 회의에서 정책관리 위원회가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D. 바라는 결과

정책은 적용 또는 개정 전에 잘 조사, 분석하며, 교육감/대리인이 모니터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적용을 위해 교육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

## E. 전략의 시행

1. 교육감은 정책 조사와 개발의 협력, 교육위원회에의 적절한 보고, 보고서 모니터하기, 절차 관리하기를 포함한 정책 적용 절차를 개발합니다.
2.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정책 적용을 위한 모든 정책은 정보항목으로 교육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F. 검토와 보고(REVIEW AND REPORTING)

1. 정책관리 위원회는 정기적 검토, 개정, 폐지한 정책의 수를 포함한 검토 절차의 갱신된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2. 교육감은 책정한 정책 문제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모든 정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새 정책 또는 정책의 개정의 개발을 지시한 경우, 정책관리 위원회가 정책 초안을 교육위원회에게 고려를 위해 제공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a) 추천한 내용에서의 검토결과가 정책을 변경하게 할 경우, 위에 명시한 정책 구성 절차를 차후 제공합니다.
  - b) 검토 결과를 통해 폐지를 추천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추천받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c) 정책관리 위원회가 정책을 검토하고 대체 변경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책은 “정책관리 위원회가 검토함(reviewed by Policy Management Committee)”으로 표시한 후, 재구성, 재발행 후, 정보제공 문항으로 교육위원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108

**정책 변경사:** Adopted by Resolution No. 64-92, January 27, 1992; amended by Resolution No. 115-93, February 9, 1993; amended by Resolution No. 341-94, May 16, 1994; reviewed August 27, 1996; amended by Resolution No. 615-01, November 13, 2001; amended by Resolution No. 388-05, July 27, 2005; amended by Resolution No. 250-19, April 9, 2019.

**정책 역사:**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425-84, August 7, 1984; amended by Resolution No.430-85, September 10, 1985; amended by Resolution No. 458-86, August 12, 1986; 1992년 1월 27일 결의안에 따른 채택번호 Resolution No. 64-92 에 따라 폐지.